

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1. 5.28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강 원 지 청 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,
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 불능 사유
이0미	1985.2.8.	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석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○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지급액(500,000원)반환 및 이후 수급기간 수급권 소멸 ○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: 2021. 5.28. ~ 6.1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장희정(tel. 033-250-19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